



캐릭터상품화(라이선스)계약서 해설서

● 안내사항

-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자와 출처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표기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 삭제, 변경할 수 있으나, 수정, 보완, 삭제, 변경된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에는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은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이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손해 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모두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점에 동의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 실제 사용하실 법률문서 양식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제공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

DKL PARTNERS 법률사무소

디케이엘(DKL)은 '혁신적인 한국 변호사들(Disruptive Korea Lawyers)'을 의미하며, DKL 모든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펌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비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콘텐츠IP, 블록체인IT, 벤처투자M&A 3가지 분야를 핵심 업무 분야로 선정하여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 등으로 불안정한 혼돈과 격변의 시대에 전문성, 정직성, 창의성을 신뢰의 기반으로 파트너간의 협업과 고객들의 소통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모든 구성원들이 신뢰, 협업, 헌신, 혁신을 핵심가치로 하여 고객 중심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 권단 변호사

홈페이지 | <https://dkl.partners>

전화번호 | 02-6952-2615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4층 413호(삼성동, 브이플러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은 만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법적 효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계약 서비스입니다.

모두싸인은 문서 업로드, 서명 요청 및 입력, 체결 완료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계약 상태 확인 및 계약서 보관·관리까지 전자계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별도의 프로그램 구축이나 앱 설치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modusign.co.kr

도입문의 | <https://modusign.channel.io>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길 8, 빌딩 6층

000 상품화(라이선스) 계약서

[해설]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 명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00000(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저작권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 저작물(명칭 : 000, 이하 “000”라고 한다)의 이용 허락에 대한 “갑”, “을”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갑 : 캐릭터 권리자인 라이선서의 상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을 :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선시의 상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명칭 : 캐릭터 명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 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저작권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000”에 대하여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지정 상품에 이용하여 해당 지정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 “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약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의]

[해설] 계약서 내 중요한 용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통하여 중요 용어의 외연과 내포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 가. 000 : “갑”이 저작권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 저작물 명칭으로서 그 캐릭터 저작물 및 서브 캐릭터의 공식디자인, 변형디자인, 2차적저작물, 한글 및 영문 명칭, 한글 및 영문 상표(출원 중 상표 포함), 로고, 엠블럼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재산을,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총괄한 의미로 간주한다.

[해설] 캐릭터 상품화권에 필요한 것은 허락 대상인 캐릭터 이미지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캐릭터 명칭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캐릭터 명칭의 경우 상표로

출원, 등록하면 상표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권을 얻어야 합니다. 본 계약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하여 캐릭터 명칭인 000로 계약서에 표기하였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대가와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를 분리하여 징수할 계획이라면 정의 규정에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시고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도 각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시면 됩니다.

나. **지정상품** : “갑”이 “000”의 이용 및 사용을 “을”에게 허락하기로 “갑”과 “을”이 합의한 상품으로서, 본 계약서 또는 부속합의서에 서면으로 해당 상품의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 따른 ‘상품 범위’, ‘해당 상품’과 함께 순번을 정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체결 이후 “을”이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별도의 계약서 또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지정상품을 세분화하여 ‘뽕기용 인형’, ‘봉제 인형’ 등으로 용도와 재질 등으로 상품을 특정하면 라이선서 입장에서는 같은 종류의 다른 용도 및 재질의 상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추가로 이용허락이 가능하게 되고, 분쟁 소지도 적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지정상품을 세분화하여 특정하기 보다는 ‘인형류’처럼 넓게 설정하면 같은 류의 제품에 대하여서는 동일 캐릭터에 대하여 다른 라이선시의 진입을 막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다. **당사자** : 이 계약에서 당사자라고 함은 “갑”과 “을”을 의미한다.
- 라. **상품화권** : “지정상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마. **공급가격** : “을”이 “갑”과 사전 합의하여 약정한 “지정상품”을 제3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처 별 판매금액을 말한다.

[해설] 본 계약서에서는 로열티를 [(생산수량*공급가격)*로열티율]로 계산합니다. 만약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한다면 로열티는 [(판매수량*공급가격)*로열티율]로 계산됩니다. 이때도 라이선시의 과대한 할인 등으로 인한 로열티 변동을 막기 위하여 공급가격은 사전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판매수량*공급가격)은 매출액과 동일하므로 ‘공급가격’ 정의 조항 대신 ‘**순매출액 : 을이 지정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라는 정의 조항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판촉, 할인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사용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서의 로열티를 계산할 때의 공급가격은 사전에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지정된 공급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생산수량이 아닌 판매수량에 실제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인 매출액(부가세 제외)을 로열티의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장로열티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매출액 기준으로 로열티를 계

산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로열티의 기준금액을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금액(도매금액 또는 소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권장소비자가격', '공장 출고가격' 등을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캐릭터 완구, 인형 제품의 경우 공장 출고가격의 8% 정도, 순환이 빠르고 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식음료의 경우에는 공장 출고가격의 0.5%-1.5% 정도가 관행이지만, 이용 허락 대상 제품의 종류, 캐릭터의 영향력, 인지도, 당사자간의 협상력에 따라 천차 만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든지간에 해당 캐릭터가 상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면 라이선시의 순영업이익(매출이 아님)의 25% 정도가 되도록 약정하는 것이 글로벌한 업계 관행이었으나 최근엔 이러한 관행보다는 위에 언급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추세로 보입니다.

제 3조 [상품화권의 허락]

[해설] 유형물에 대한 상품화권은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외에 전시의 방법이나 공연의 방법, '레고 형태로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는 방법' 등과 같이 계약목적에 따라 저작권재산권(복제, 배포, 대여, 공중송신, 공연, 전시, 2차적저작물작성) 개별적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구분하여 디지털상품화권의 경우에는 복제 및 전송(또는 배타적발행) 또는 복제 및 방송의 방법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유통 및 판매, 정산 방법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디지털상품화권계약서 양식이 적합합니다.

가. “갑”은 “을”에게 ”000”를 복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아래 나항에 기재한 “지정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000”를 “지정상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해설] 000가 상표로 출원, 등록된 경우 저작물의 ‘이용’과 구별하여 상표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므로 용어를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나. ”지정상품”의 순번, 상품범위, 해당상품,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해설] 허락 대상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를 상정하여 표로 만들었으나, 한개 상품만 대상 이면 표로 할 필요 없습니다.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와 달리 허락 대상 상품만 ‘봉제인형’, ‘조립식 장난감’, ‘유아용 물통’ 등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순 번	상품범위	해당상품	브랜드
1			

2			
3			

[해설]

순번 : 허락한 지정상품의 갯수에 따라 표의 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품범위 :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1류에서 45류까지 있습니다) 구분에 따른 상품범위를 기재합니다. (예 : 제25류 의류)

해당상품 : 해당상품을 기재합니다. (예 : 스포츠의류)

브랜드 : 지정상품의 브랜드명 또는 상표를 기재합니다. (예 : 나이키)

다. “을”은 “지정상품”의 지정된 위치에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저작권 표시는 무방식주의이므로 공인된 표기방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널리 사용되는 표시를 예시로 기재한 것이니 참조하여 표기하시면 됩니다. 저작자 표기 외에 홈페이지 주소나, 지역 표시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표기하시면 됩니다.

Copyright © 00000 All rights reserved.

www.00000.com

License by 00000

Licensed only for the use in Korea

[해설]

Copyright © 00000 All rights reserved. : 본 표기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표기이므로 저작권이 있는 라이선서의 상호 또는 실명, 이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등록상표나 브랜드를 저작자로 표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기가 아닙니다.

WWW.000000.COM : 라이선서의 홈페이지 도메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삭제하여도 무방합니다.

Licensed only for the use in Korea : 사용 허락 대상 국가를 특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라. “지정상품”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정한 조건의 범위에 따른 상품화권을 허가한다.

[해설] 계약기간, 허락지역 등 기타 조건을 의미합니다.

제 4조 [사용지역]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위 저작물의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대한민국으로 제한한다.

[해설] 사용 허락 국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작물은 국가별로 분리하여 이용 허락이 가능합니

다.

제 5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이며, “을”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의 만료 60일 이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재계약 여부와 내용은 계약종료일 전에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해설] 계약기간은 상품화권 허락기간을 의미하며, 본문 표기 대신에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등으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재계약 의사표시 기간은 60일 외 30일이나 90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60일 이전까지 갑, 을 모두 갱신거절 또는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제 6조 [사용료]

[해설] 저작물의 이용허락 대가와 상표의 사용 대가를 구분하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 “을”은 본 계약에서 허용된 저작물의 이용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이하 “로열티”)로 “갑”에게 생산량을 기준(증지 교부수량기준)으로 “지정상품”의 “공급가격”의 %(부가세 별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을”이 공급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전 “지정상품”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여 계산하며,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할인, 특판, 판촉 등 “공급가격” 이하 판매 가격을 로열티 정산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해설] 로열티 산정 기준으로, 생산시에 캐릭터가 이미 사용된다는 점, 재고처리기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량 기준이 타당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실제로 라이선시가 판매하는 판매수량 기준으로 로열티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라이선시가 매출이 없어 이익이 없고 소비자가 실제 캐릭터를 효용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라이선서한테 로열티를 주는 것이 부당하는 관점으로 라이선시에게 유리한 기준이 됩니다. 캐릭터의 인지도나 계약협상력에 따라 생산량 또는 판매량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시장 관행입니다. 만약 순매출액 기준으로 로열티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정의 규정 제 2조 마항 공급가격 정의 대신 ‘순매출액’ 정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본 조항을 “~갑에게 지정상품의 순매출액의 %(부가세 별도)를 현금으로~”라고 수정하면 됩니다.

로열티율은 해당 캐릭터가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캐릭터의 시장 인지도 및 저명도,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공동사용 여부, 상품의 기존 시장 점유율 및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로 결정합니다. 통상 해당 상품의 핵심적인 지식재산권인 경우에

는 영업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영업이익을 매출로 환산할 경우의 매출액 대비 비율(해당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의 7%라면 그것의 1/4인 매출액의 1.75%가 로열티의 일응 기준이 됩니다) 표기하면 됩니다. 캐릭터 완구류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에서 12% 사이에서 양사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판촉, 할인, 특판 상품의 경우에는 로열티율을 지정한 공급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이나 무상으로 변경하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을”은 “갑”에게 금액 ₩ (일금 정, 부가세 별도)을 최저보장로열티로 현금으로 계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최저보장로열티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해설] 최저보장로열티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 이용허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라이선시 업체의 생산, 마케팅, 판매 능력과 무관하게 최소한 라이선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계약 당시 연간 최소 1만개를 생산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로열티를 계산하여 최저보장로열티로 기재하면 됩니다.

최저보장로열티의 지급기한을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다. 위 가항에 의해 산출한 로열티 총액이 위 나항의 최저보장로열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갑”에 그 초과 로열티를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라. 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반드시 득한 후 최대 개월 간에 한하여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을”이 재고처리 기간인 개월이 초과 하도록 재고품을 판매 하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갑”의 입회 하에 이를 모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재고품을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해설]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로열티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기간을 설정하고, 판매량 기준으로 로열티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통상 1개월로 합니다. 재고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기간 동안 새로운 라이선시와의 계약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은 상태이므로 라이선시의 피해를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재고품 소진까지 유통을 허락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모두 폐기를 해야 하지만 재고품을 모두 폐기하면 사회적 낭비가 되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부 처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7조 [사용료 정산과 지불]

가. “을”은 생산할 “지정상품”의 품명, 생산시기, 생산량, 출고가, 공급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기재한 ‘증지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면 “갑”은 이를 근거로 “을”에게 증지를 발행, 판매한다. “을”은 증지 대금 (장당 원, 변경가능)을 “갑”에게 익월 15일 까지 정산하여 현금으로 25일 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계약 제품은 “을”이 ‘증지 신청서’에 기재한 생산량 및 출고가, 공급가격, 권장소비자가격에 따라 본 계약 기간 내에 모두 생산 판매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실비를 기재합니다.

- 나.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품 증지를 부착하여 생산한 제품량과 각 판매처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로열티 정산 보고서’를 익월 15일까지 증빙 자료 (납품 일시, 납품처명, 납품 가격, 납품 수량,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 금액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을”이 ‘증지 신청서’에 기재한 생산량과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위 제 6조 가항에 따라 산출한 로열티가 본 계약 상의 최저보장로열티를 초과 했을 때 “을”은 “갑”에게 ‘로열티 정산 보고서’에 의하여 정산된 초과 로열티 금액을 보고서 제출 해당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 라. “갑” 또는 그 지정 검증 담당자는 “을”의 계약제품 생산 및 판매의 확인을 위하여 정상 업무시간에 “을”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을”의 본사, 지사, 공장, 하청공장, 판매점 등을 방문하여 관련 장부 또는 자료를 열람, 확인, 복사하거나 “을”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을”은 로열티 정산에 관련된 문서를 본 계약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해설] 상사채권의 시효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장부 보존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반영한 기간입니다.

마. “을”은 위 가항에 따라 “갑”에게 제출한 ‘증지 신청서’에 기재한 생산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또한 “을”은 위 가항에 따라 “갑”에게 제출한 ‘증지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가격과 다른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계약 제품 모두에 반드시 본 계약에 따라 교부 받은 증지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 하여야 한다.

[해설] 로열티 산정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증지신청서 상의 공급가격보다 실제 공급가격을 높게 판매하면 로열티를 적게 내려고 기망한 것으로 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바. “을”은 제 6조 나항의 최저보장로열티와 초과로열티 및 제 7조 가항의 증지 대금을 각 제 6조 나항과 제 7조 가항 및 나항에 기재된 기간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원금의 연 %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실 지불시점까지 일할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상 법정 지연손해금인 연 6%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인 연 12% 사이에서 협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다면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모든 대금을 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는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간접강제 필수 조항입니다.

사. “을”은 그 제조하는 지정상품 1개마다 “갑”이 교부한 증지를 “지정상품”의 공장 출고 전에 “갑”이 요구하는 위치에 부착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공장출고 전에 증지가 부착되어야 생산량 기준 로열티 산정 원칙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량 기준 로열티 약정을 하였다면 증지부착 시점을 공장 출고 시가 아니라 을이 지정상품을 판매처에 유통하기 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증지를 지정상품 이외의 상품에 유용,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본 조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별도 서면 합의로 증지를 QR코드 등 기타 위조방지 수단으로 대체하거나 “을”의 ERP 시스템에 기록된 생산량을 로열티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설] 기술의 발달로 홀로그램 증지 외 기타 위조방지수단이 등장할 수 있고, 을을 신뢰할 수 있을 경우 을의 내부 전산 시스템 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8조 [광고, 판촉 및 판매 활동]

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지정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 활동이나 판촉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설] 구체적으로 을에게 광고매체, 광고비 등을 특정하여 지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나. “을”은 “000”가 포함된 광고와 모든 판촉물 (카타로그, 팸플릿, 광고디자인, 디스플레이 등)을 사전에 샘플을 제시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갑”이 “000”의 광고, 판촉 활동으로써 전개 되는 각종 이벤트와 홍보마케팅에 “을”의 계약 제품을 홍보할 경우, “을”은 “을”의 계약제품의 홍보에 필요한 광고, 판촉물과 전시 샘플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해설] 000의 주지성 확보를 위해 갑이 000 자체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광고, 이벤트 등을 하도록 요구하고, 거기에 을의 제품을 홍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 9조 [부수적 이용]

가. “을”이 본 제품을 “을” 회사 또는 타 기업체의 사은품이나 기타 보너스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본 계약의 권리 범위와 별도의 서면 계약에 의거하여서만 진행할 수 있다.

[해설] 이 경우 서면 승인 시 별도 합의서나 계약으로 로열티의 기준을 지정 공급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갑”의 협력업체에서 광고, 판촉, 전시 등의 목적으로 구매 의뢰가 있을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기로 하며, 제공가는 공급가격의 %로 한다.

[해설] 로열티 비율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할인 금액을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 위 나항의 해당 제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의무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로열티 증지 부착 의무는 위조품 방지를 위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제 10조 [제품 생산]

가. “갑”은 “을”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ARTWORK(제품용 샘플 이미지 및 캐릭터 비율 및 색상 매뉴얼 포함, 도서 또는 파일 형태)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 기본적인 ARTWORK 이외에 “을”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실비를 지급받고, 이를 “을”에게 제공한다. 단, 이 경우 기본적인 ARTWORK의 상품화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한다.

[해설] 라이선서인 갑은 상품화권 대상 제품들의 캐릭터 디자인, 색상, 크기 비율 등의 통일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매뉴얼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적용이 된 캐릭터 제품 이미지 샘플이 포함된 아트워크 또는 디자인가이드 등을 라이선시에게 제공하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캐릭터 디자인 품질 관리를 합니다.

단서조항은 을의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수정은 을의 부담으로 하되, 해당 수정이 향후 갑이 타 라이선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무료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기본적인 ARTWORK 이외에 “을”이 원작자의 원화 또는 도안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한 별도의 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합의 하에 제 8조 가항에 근거한 광고, 판촉활동을 위한 원작자의 원화 또는 도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한다.

다. “갑”은 “을”에게 연 1회 이상의 신제품용 ARTWORK을 제공하기로 하며 “을”이 기본

- ARTWORK에 대하여 “을”의 계약제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 “갑”은 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수정안을 “을”에게 실비로 제공한다.
- 라. “을”은 “갑”이 제공하는 ARTWORK를 이용하여 생산할 제품의 컨셉, 디자인, 재료, 패턴 등 생산 하고자 하는 제품의 아이디어 및 기초 디자인을 완성한 후 “갑”의 1차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을”은 1차 승인을 받은 후 2차로 계약제품(샘플)을 제작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제품(샘플) 및 관련된 계약제품에 한하여만 생산할 수 있다.
 - 바.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절차에 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정상품을 타 상품과 포함하여 패키지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 사. 사. “을”은 생산된 제품을 “갑”에게 **샘플로** **개씩**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로열티 및 증지대금 지급의무는 면제되나, 증지부착의무는 유효하다.

제 11조 [생산 및 판매 의무]

- 가. “을”은 “갑”이 요청할 경우 계약 제품의 생산 방법, 생산 계획, 출고가 및 공급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판매계획, 주요 판매처, 판매량 등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갑”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 나.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제10조 마항에 따라 계약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개시하여야 한다.

[해설] 적은 금액의 최저보장로열티만을 약정하거나 최저보장로열티가 없는 경우 계약만 하고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서가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을 수 있고 다른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럴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기한은 합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 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제품 생산, 판매 개시 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마. 제 7조 가항에 따라 증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미부착 제품, 제 3조 나항의 지정상품이외 제품 또는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제품은 불법 제품으로 간주하여 “갑”이 지정한 입회인의 입회 하에 “을”이 책임지고 전량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 12조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제한]

- 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창작하거나 제작된 “000” 관련 2차적저작물, 상표, 디자인, 발명 등 모든 지식재산권(출원, 등록할 권리 포함)은 “갑”에게 귀속하며,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창작하거나 출원, 등록한 “000” 관련 2차적저작물 및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해설] 상품화권계약이 아닌 영상화 등을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 허락 계약의 경우 이로 인하여 창작된 애니메이션 등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제작자 사이의 협의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후 청산 방식, 공동소유 방식, 소유와 사업권의 분리 방식, 수익배분 조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 조정을 위하여 이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다만 본 계약처럼 캐릭터 상품화권계약에 기하여 제작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의 경우에는 통상 다른 약정이 없으면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시장 혼동을 막기 위하여 라이선서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갑의 동의를 얻어 을의 명의로 “000”이 포함된 상표 등을 출원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 후 을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표를 실비 정산하여 갑이 이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나. “을”은 “갑”이 본 계약서에서 허락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000” 및 “갑”의 ARTWORK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 다. “을”은 “갑”이 제공한 ARTWORK이외의 ARTWORK이나 유사한 그림 및 제 3자가 그리거나 제작한 ARTWORK를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캐릭터 디자인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통한 라이선시 제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항입니다.

- 라. “을”은 “갑”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캐릭터의 원화 및 원고를 사용한 후, 계약 기간 만료 5영업일 전 혹은 계약 종료 즉시 “갑”에게 전부 반환 하여야 하고, 동시에 “갑”이 제공한 자료 중 “을”이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배포한 것은 전부 수거, 폐기 하여야 한다.
- 마.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의 캐릭터를 “갑”이 지정하고 사전에 승인한 형태 및 색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을”이 이를 독자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 바. “을”은 본 계약을 통해 “갑”으로부터 이용 권한을 취득한 저작물 및 캐릭터를 다른 저작물 및 캐릭터와 동일 제품에 혼합하거나 세분화 시키는 방법으로 생산, 판매 및 광고, 판촉 등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라이선시가 무단으로 허락받지 않은 타사의 상품에 캐릭터를 무상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사.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갑”은 “을”의 공장, 영업소 또는 창고에서 “을”의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갑”의 검사 결과 “을”이 제품 생산, 판매 하는 제품에 품질상의 불량 발생 하거나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갑”은 그 제품에 관한 해당 저작물 및 캐릭터의 사용을 즉시 중지 시킬 수 있다.

제 13조 [판권 표시]

- 가. “을”은 “을”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영어 또는 한글로 판권 표시 및 권리 문구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생산, 판매 하여야 하며, “갑”으로부터 정품을 식별할 수 있는 증지(기타 위조방지수단 포함)를 구입하여 모든 제품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을”은 “을”이 생산,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제 3조의 다항의 권리 문구와 “갑”으로부터 본 상품화권을 취득하였음 및 제 3자는 “갑”과 “을”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기재 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 14조[제3자 권리분쟁에 대한 처리]

- 가. “갑”과 “을”은 제3자에 의해 “지정상품”에 사용된 “000” 관련 지식재산권의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을”과 협력하여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을”은 제3자에 대해 “갑”과 사전 협의 없이 어떠한 대응 행위도 직접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000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불법침해한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는 권리자인 갑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나. “을”의 “지정상품”의 제조, 설계, 표시 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갑”을 면책하여야 하며,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000”의 권리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제품이나 광고물에 표시된 서체의 파일 저작권 이슈나 제품의 기능상 품질상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이 종종 발생합니다.

- 다. “지정상품”에 사용된 “000”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을”을 면책하여야 하며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지정상품”의 제조, 설계, 표시 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캐릭터에 대하여 제3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공동저작권자와의 권리 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보증 및 배상]

- 가. “갑”은 “000”에 대하여 적법하고도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과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 보증한다. “갑”은 “을”이 요구할 경우

“갑”이 “000”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 나. “갑”은 “을”에게 허락한 “지정상품”과 동일한 해당 상품에 대하여서는 본 계약기간 동안 “000”의 이용 및 사용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단, 재고처리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해설] 독점배타적 이용허락 약정을 따로 하지 않는 한 꼭 필요한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관행 및 신의칙상 동일 제품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용허락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부가한 조항입니다. 다만, 최저보장로열티를 받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사실상 허락상품에 대한 독점이용 효과가 발생하는 본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상호 공평합니다.

단서조항은 재고처리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시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라이선서는 제3자와 새로운 상품화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부가한 것인데, 합의에 의하여 재고처리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삭제하시면 됩니다.

- 다.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생산되는 “지정상품”이 인체에 유해한 어떤 요소나 물리적, 사회적 위험성 등이 없음을 샘플 등을 통해 보증하고, 관련된 모든 법령과 기준에 위반됨이 없이 생산되고 판매됨을 진술, 보증한다.
- 라. “을”은 “지정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물의 표시 내용 및 홍보 방법이 “갑” 또는 “000”의 신용, 이미지, 브랜드 가치 및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진술, 보증한다.
- 마. “갑”과 “을”은 위 각항의 진술 보증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와 위험비용 및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모두 배상해 주기로 한다.

제16조[위약벌]

[해설] ‘위약금’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이 되는 성질의 금액으로서 실제 손해액이 위약금보다 더 큰 경우에도 위약금 이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반면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하여 너무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부과금으로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벌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조는 중요한 계약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적 성격이 강하므로 위약벌로 표기하였고, 공평을 위하여 위약벌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 해당 계약조항 위반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의 2-3배까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을”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약벌을 지급한다. 단, “갑”이 “을”의 행위로 인하여 위약벌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벌을 초과하는 손해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가. “을”이 생산보고서 기재의 수량을 초과하여 지정상품을 제조할 때 지정상품의 소매가격 (최고 소매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에서 제조총수 공급 금액의 30%

[해설] 소비자가격의 30%는 을의 판매이익의 대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비율로서 계약위반을 할 유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성격의 징벌적 금액비율로 설정하였는데 상호간의 합의로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다한 위약벌은 법원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나. 제4조를 위반하여 승인 받지 않은 지역에 상품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정상품 총제조 수량의 소매가격 총합의 30%
- 다. 제10조 바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지정상품을 포함한 패키지의 구매단가 중 최고의 액에 그 제조총수 공급 금액의 30%
- 라. 제7조 가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증지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지정상품의 소매가격에 제조총수 공급 금액의 30%
- 마. 제7조 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증지를 유용하였을 때 유용한 상품의 소매가격에 제조총수 공급 금액의 30%
- 바. 제6조 라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고 처리 기간을 초과하여 지정상품을 판매, 유통시키거나 폐기처리하지 않았을 때 지정상품의 소매가격에 제조총수 공급 금액의 30%
- 사. 제18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위탁, 재허락을 한 때에는 지정상품의 소매가격에 제조총수 공급 금액의 30%

제17조 [비밀유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관련된 업무상 일체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유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본 계약 종료 후 혹은 해지 후에도 유효하다.

제 18조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9조 [계약 해지]

[해설]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계약조항의 위반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발생하여 서면 통지로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제 1항에, 그 외 계약위반의 경우 시정기간을 두고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 2항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가. “갑” 또는 “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기타 시정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합의하여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 ① “갑” 또는 “을”이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하거나 회생개시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 ② “을”이 “갑”에게 최저 보장 로열티 또는 초과 로열티 및 소정의 고료, 디자인료, 증지 대금 등에 대한 지급을 약정 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해설] 양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갑” 또는 “을”이 제3자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정도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거나, 각종 세금의 미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
 - ④ “을”이 “지정상품”의 생산수량 또는 로열티 정산액을 축소,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 ⑤ “을”이 본 계약 제11조 나항 또는 다항의 기한을 위반한 경우
 - ⑥ “갑”이 “000”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을”의 “지정상품” 판매가 어렵게 된 경우
 - ⑦ “을”의 “지정상품”의 결함 또는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000”의 신용 또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 ⑧ 기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신뢰가 상실된 경우
- 나.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이 시정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통상 14일로 기재하는데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 미만의 너무 짧은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재고 제품을 폐기하여야 한다.
- 라.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방의 귀책사유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무위반자 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마. 본 조에 의한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청구 및 위약벌 청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바. 본 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7조(사용료 정산 및 지불 의무), 제16조(위약벌 지급의무), 제17조(비밀유지의무)의 효력은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제 20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선의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는 재판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해설]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전속관할 법원은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5곳입니다. 양 당사자간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21조[부칙]

- 가.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직접 수교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또는 동일자 등기우편으로 확인된 전신, 전보, 팩스로 발송하여야 한다.
- 나. 모든 권리의 포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추후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추후 계속되는 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 또는 그 조항의 변경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 다. 오로지 편의상 붙여진 각조의 제목들은 이 계약의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라. 본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준거법에 의하여 무효, 부적법, 혹은 집행불능인 경우에도 본 계약의 잔여 조항의 유효, 적법성, 침해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는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새로이 유효, 적법한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무효 조항의 본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서명, 날인을 위한 여백)

이상 “갑”, “을”은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 하기로 약정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갑”, “을”이 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주소:

대표자: (인)

“을”

상호:

주소:

대표자 : (인)